

「포용과 사회통합 연구」 편집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2024. 12. 23.

제1조(목적) 「포용과 사회통합 연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 지침은 장애인고등교육개발원(이하 “개발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포용과 사회통합 연구」의 발간과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과 편집위원(이하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부편집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개발원 원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연구위원 이상 및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추천하고 원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개발원 소속으로 편집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3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구성지침) 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구성한다.

- ① 다양한 학문적 시각이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활동이 특정한 시각이나 입장에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 ② 세부연구분야별로 고른 분포를 이루도록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활동이 특정한 분야에 치중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 ③ 지역별로 고른 분포를 이루게 하여 편집활동이나 연구활동이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

④ 특정 학교나 기관에 편집위원이 집중되지 않아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의 자격) 외부편집위원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① 박사학위 소지자

②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국책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개발원 이상인 자

제6조(편집위원장의 역할)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① 게재논문 원고의 모집 공고

②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위촉

③ 편집위원회의 소집

④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

제7조(위원회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8조(기고논문 접수) 논문의 접수 방법과 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기고논문작성: 기고논문의 작성은 편집위원회가 정한 투고 지침에 따른다.

② 기고논문접수: 기고논문은 상시 접수하며, 온라인 논문투고 심사시스템을 통해 투고한다.

③ 접수사항의 고지: 기고논문의 접수 시 편집위원회는 그 사실을 논문제출자에게 고지한다.

제9조(기고제한) 위원장, 간사는 임기 내에 기고할 수 없다.

제10조(심사위원 위촉)

- ① 일정량 이상(약 3~4편가량)의 기고논문이 접수되면 편집위원에게 이메일을 통해 논문 제목을 전송하고 논문마다 3인의 심사자를 추천받는다.
- ② 심사위원은 위원장이 편집인을 포함한 내부위원과의 협업을 통해 추천된 심사자 가운데 각 논문당 3인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제11조(연구윤리 준수 여부 사전점검)

- ① 투고된 논문(게재 부적합 판정 논문 제외)에 대하여 논문표절방지 프로그램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 ② 논문표절방지 프로그램 검사 결과 편집위원회가 판단하기에 표절로 의심되는 논문은 심사절차를 밟지 않고 사전검사 내용을 저자에게 전달, 반송조치한다.
- ③ 저자에게는 사전검사 결과에 대해 소명하거나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재투고할 기회가 부여된다.

제12조(논문의 심사) 제10조 제2항에서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은 논문주제의 적절형, 문헌연구의 적절형, 분석모형 및 방법의 적절성, 논리전개의 일관성, 이론, 그리고 학문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제13조(익명성 유지) 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오직 학자적 양심과 학문적 관점에 의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과 기고자간의 익명성을 엄격히 유지한다.

제14조(게재 여부 판정)

- ①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투고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인적사항을 삭제한 심사용 논문을 보내 평가를 의뢰한다.

- ② 위촉된 심사위원은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평가란의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중 택일하여 결정하고, 그 요지를 상술한다.

③ 논문심사 판정표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심사결과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의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의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수정 후 재심의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의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의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의 게재불가	게재불가

제15조(수정기고) 심사과정을 통해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에는 6개월 경과 후에 수정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개입) 「포용과 사회통합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과 심사기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 ① 위원회는 최종 심사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초심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위원에게 참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7조(이월심사) ‘수정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을 주어진 기간 내에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다음 호에 이월하여 심사한다.

제18조(심사결과 통보) 심사가 완료된 후에 기고자에게 투고일과 심사완료일, 최종심사결과를 통보한다.

제19조(논문의 재심청구) 개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저자가 이러한 판정에 불복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이유와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재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0조(기타) 원내에서 기고된 논문도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부칙 <제정 2024. 12. 23.>

이 지침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